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17 선고 2023가단1181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3. 13.

판 결 선 고 2024. 4. 17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2. 1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. 12. 16. 접수 제509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
- 1) 원고는 2014. 3. 11. B와 사이에,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해 보증기한을 2015. 3. 10.(이후 2023. 3. 3.로 순차 연장되었다), 보증금액을 297,500,000원으로 C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되, 원고가 B을 대신하여 C은행에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은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, 위약금,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- 2)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14. 3. 17. C은행으로부터 350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원고의 대위변제 등

- 1) B의 위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2023. 1. 23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23. 7. 10. C은행에 297,377,041원을 변제하였다.
- 2)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 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 1,824,260원이 발생하였다.
- 3) 원고는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2,865,113원을 지출하였다.

다. B의 재산처분행위

- 1) B과 피고는 외사촌 관계로, B은 2021. 1. 15. '435,000,000원을 이자 월 1%, 변제일 2022. 11. 30.로 정하여 차용한다'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.
- 2) 그 후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

2022. 12. 16.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22. 12. 16. 접수 제50964호로 채권최고액 435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9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2)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,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. 12. 16.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23. 1. 23.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C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, 그 후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23. 7. 10. C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어 확정되었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

1) B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

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E,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합계 1,022,086,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, G조합 등에 대하여 합계 2,514,682,60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2) 사해행위 해당 여부

가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

나)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.

다)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2년경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위 대여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뒤늦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② 적어도 2021년경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235,000,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2년경 발생한 차용금 채무 또는 2021년경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인데, 위 가)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다.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

1)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(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).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소 결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(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이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,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B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)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신구

별지